

계약규정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u><신 설></u>	제4조2 (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① 구매요청부서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부서는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위탁하거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계약방법에 따라 이를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수성·전문성 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담당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u><신 설></u>	제5조2 (소규모 계약의 직접집행) 구매요구부서는 추정가격(VAT별도)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의 물품구입이거나 특수지역사정 및 희귀품으로 정상적인 계약절차에 의하여서는 적기 조달이 곤란할 긴급 소요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는 계약담당부서로 요청하지 아니하고 직접집행할 수 있다.
제7조2 (예정가격의 비치) ① (생 략) ② 계약담당자는 이 규정 제44조 제1호 및 제6호(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이 규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이 규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코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7조2 (예정가격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담당자는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6호(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가목 및 바목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제61조의2의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98조에 따른 개산계약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6조에 따른 해외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코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제18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 ② (생략) ③ 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18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④ 계약담당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 상대방이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를 계약 체결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방이 입찰에 참가할 때에 제4항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약서에는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이 규정 제103조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현행	개정
제44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이 규정 제5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같은 조 제1항 제3호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생략) 3. 회사의 자회사(회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 라. (생략) 4. ~ 6.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44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이 규정 제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현행과 같음) 3. 회사의 자회사(회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 라.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회사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조달계약"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조달계약"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1. 회사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회사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신 설>	④ 계약담당자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으로 부터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제출받아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법인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이 규정 제10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과 제4항은 제1항제1호·제2호·제3호[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 가목(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으로서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⑥ 계약담당자가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4조의3 (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2호 및 제7호(「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해당 수의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3.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4. 수의계약의 법령상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

현행	개정
제58조 (입찰방법)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 서명(외국인에 한함) 및 전자서명(이하 이 항에서는 “인감”이라 한다.)은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 ⑤ (생략) 제60조 (입찰의 무효) ① (생략) 1. (생략) <신설> 2. ~ 13. (생략) ② ~ ③ (생략) 제100조 (계약의 특례) ①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의 물품구입이거나 특수지역사정 및 희귀품으로 정상적인 계약절차에 의하여서는 적기 조달이 곤란할 긴급 소요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는 직접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하도급계약인 경우 모계약상의 계약조건이 본 규정과 상이한 경우 모계약의 계약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규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수주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처 요구사항의 이행, 사업정보의 비밀유지, 사업완료기한의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또는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수의계약 관련 정보는 최소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58조 (입찰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 (입찰의 무효)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의 2. 이 규정 제103조제7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2. ~ 1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0조 (계약의 특례) <개정 제5항으로 수정이관> <개정 제4항으로 수정이관> ① 이 규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사업을 수주하거나 수주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처 요구사항의 이행, 사업정보의 비밀유지, 사업완료기한의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또는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현행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또는 계약의 특성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장이 인정한 경우 < 현행 제2항을 수정이관> < 현행 제1항을 수정이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④ 하도급계약인 경우 모계약상의 계약조건이 이 규정과 상이한 경우 모계약의 계약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⑤ 이 특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10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등에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10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른 기관장으로부터 그 제한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현 행	개 정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협력업체등록주관부서의 협의를 거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3항 후단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④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기간, 제한기간의 가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직접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발생하게 한 조합원에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회사의 계약 관련 업무수행자(관계 민간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그 밖에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8호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5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기간에 관한 사항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부실벌점, 하자비율, 부정행위 유형, 고의·과실 여부, 뇌물 액수 및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이 규정 제99조 따른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제4항을

현 행	개 정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로서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다. ⑦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신 설> <신 설> ⑧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시일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체명(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⑨ 계약담당자는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 기간에는 회사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가 상호변경이나 대표자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 기간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⑪ 계약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제8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항이 게재된 자를 포함한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적용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해서도 제4항을 적용한다. 1. 법인 또는 단체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자로 한정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원 ⑧ 계약담당자는 제4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 제한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⑨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제4항,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6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낙찰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⑩ 계약담당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로서 해당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⑪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제2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업체명(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은 대표자의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번호 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현 행	개 정
<신 설> ⑫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⑬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⑭ 제12항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신청을 심사한 결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결정을 취소하거나 그 제한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항을 준용한다. <신 설>	4.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⑫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업체(상호)명,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2. 제1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항 ⑬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⑭ 계약담당자는 제4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와 제1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가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제한기간 내에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참가자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⑮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103조의2 (부정당업자 사전 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 ① 계약담당자는 제103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제104조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전자	제103조의2 (부정당업자 사전 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 ① 계약담당자는 제103조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4조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 및 계약이행에

현 행	개 정
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호가목 중 작전상의 병력이동에 따른 사유와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물량 또는 규모 다. 예산액 2.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에 관한 사항 가. 물품 제조·구매계약 : 성능, 재질 및 제원 등 계약목적물에 요구되는 조건 나. 용역계약 : 과업내용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용역의 세부사항 3.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제99조제3항 적용 여부)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자. 제61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자별 입찰금액 4.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5.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 가. 검사 및 검수 결과 나. 계약이행 완료일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106조 (계약 관련 법령 등의 준용) ① 우리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u>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u> ② (생 략)	제106조 (현행과 같음) ① 우리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u>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u>」, 「<u>국가계약법</u>」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결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